

2018학년도 후기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안내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1. 계약학과 제도

가.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나. 개념 :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양성과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위 과정

다. 설치 유형

1)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 교육을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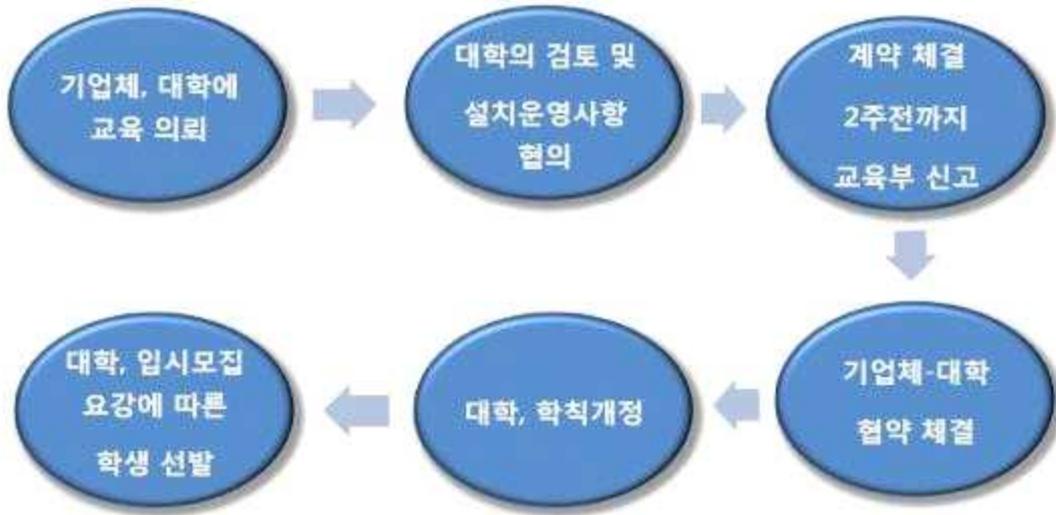
2)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경비의 50% 이상 학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협의에 의해 개설하여 운영하는 유형

라. 산업체 범주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협약대상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 동일한 광역행정구역(경기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간 통학거리가 100Km이내
-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마. 계약학과 설치 절차



2. 지원자격

가. 산업체 재직요건

- ◎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장(기관장)이 입학할 수 있고 학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자
- ◎ 본교와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서 입학일 기준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소속 직원으로 4대 사회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함)
- ◎ 산업체에서 계약학과 학생 **1인당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
- ◎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이상** 재직한 자 (입학일 기준)

3. 산업체의 범위 및 입학 자격

산업체 추천 대상자 입학자격

- ♠ 대학원 석사 과정
 -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취득자
- ♠ 대학원 박사 과정
 -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취득자

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약형태	학과	전공명	학위과정	입학정원	수여학위
재교육형	사회복지행정학	사회복지행정	석사	20	사회복지학석사
			박사	20	사회복지학박사
재교육형	복지경영학	사회적기업학	석사	20	경영학석사
재교육형	U-CityIT융합 도시정책	보안경호소방안전	석사	20	공학석사
			박사	30	공학박사
재교육형	ICT환경공학	① ICT환경공학 ② ICT환경생태학 ③ ICT환경원예학	박사	20	환경공학박사
채용조건형	IT융합전자공학	IT융합전자공학 ¹⁾	석사	15	공학석사
재교육형	IT융합지능로봇 공학	IT융합지능로봇공학	석사	20	공학석사
			박사	15	공학박사
재교육형	스마트시티안전 융합	스마트시티안전융합	석사	20	공학석사
			박사	20	공학박사
재교육형	산업안전학	① 보안경호소방 안전융합 ② 재난안전학	석사	30	공학석사
			박사	60	공학박사

※ 각 학과별 매학기 5인 이상 등록 시 개설되며 인원 미달 시 개설되지 않음

1) 중소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정부재정 지원 사업 임 (등록금 100% 정부 지원)

5. 전형 및 배점

학위과정	전형방법	
석사 / 박사	면접평가	합계
	대학원 전형 기준 참조	100% (100점)
<p>□ 전형료 50,000원 (석사), 100,000원 (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료 납부계좌 : 대학원 입학지원시스템 접수 시 납부 <p>□ 합격자 선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며 본교 합격자 사정원칙에 따름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지원자격의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 본교와 산업체간의 협약에 의하여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개설 교육과정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산업체 계약 시 필요 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계약학과 설치요청서	본교 소정 양식
② 계약학과 위탁교육 추천 및 의뢰서	본교 소정 양식
③ 사업자 등록증	
④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본교 소정 양식
⑤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입인원 표시 필수) (http://minwon.nhis.or.kr)

■ 제출기한 : **2018. 6. 27. (수) ~ 2018. 7. 13. (금)**

■ 제출처 : (우: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디자인관 301A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담당자

■ 문의처 : 031-477-7503 / FAX. 031-477-7506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필요 서류)

※ 학교와 산업체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비고
개인 공통	① 계약학과 입학원서(본교 양식)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http://graduate.hansei.ac.kr)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개인이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발급 (www.4insure.or.kr) 4대보험 가입 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초수급자·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③ 201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④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예정자 재직증명서 원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소정 양식
석사	①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대학성적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입학원서 작성 시 제출
박사	①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석사학위 논문 및 연구계획서 1부 ③ 이력서(경력위주 작성) 1부 ④ 최종 출신학교 지도교수 추천서 (본 대학교 대학원장 추천서 대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입학원서 작성 시 제출 학점 졸업자는 연구계획서만 제출
비고	주) 관련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산학협력단 계약학과에서 Download 가능	

6. 전형관련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원서 접수	2018. 7. 18(수)~ 2018. 7. 2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입학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http://graduate.hansei.ac.kr)
면접 일자	2018.08.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관 4층 고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입학지원시스템
합격자발표	2018.08.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공지 (개별통지 없음) 	(http://graduate.hansei.ac.kr)
등록기간	2018.08.8.(수) ~ 2018.08.20.(월)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부담금 : 가상계좌 • 본인부담금 : 가상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지원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산업체 · 본인 부담금 별도로 가상계좌로 납부 • 토요일 일요일 수납 불가 • 산업체부담금은 반드시 법인계좌에서 납부해야 함
기업납부금 납부확인 서류제출기간	2018. 08. 2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팩스번호 FAX. 031-450-5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을 팩스 전송함 • 미제출시 입학취소

■ 학번생성 : 2018. 08. 22(수)

■ 수강신청기간 : 2018. 08. 23(목) ~ 24(금)

■ 2018학년도 2학기 개강 : 2018. 08. 27(월)

■ 전형료 : **50,000원 (석사), 100,000원 (박사)**

- 전형료 납부계좌 : 대학원 입학지원시스템 접수 시 납부

■ 전형료 환불 안내

- 접수가 완료된 이후(전형료 결제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이후 천재지변, 질병(입원) 또는 지원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은 후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원 (서류접수 수수료 공제)을 환불합니다.

7. 합격자발표 및 등록 안내

■ 합격자발표

1. 합격자 명단은 입학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2. 합격자는 지정된 일시에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산업체 납부금 고지서는 반드시 산업체에 고지하여야 하며, 산업체부담금 및 개인부담금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3.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취소 됨.

■ 등록안내

1. 등록금은 개인부담금과 산업체부담금을 각각의 지정(가상)계좌에 납부.
2. 산업체부담금은 반드시 법인계좌에서 이체해야하며, 이체확인증을 기한 내에 본교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산업체 이체확인증** 미제출시 입학취소하고 전형료를 제외한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환불함
 - 방문제출 :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대학원관 4층 대학원 교학팀
 - 팩스제출 : 031-450-5137
 - 지원 서류에 제출한 법인계좌와 동일한 계좌에서 이체 된 증빙 서류만 인정함
 - 이체증빙 예시
 - 입금확인증 및 법인 통장사본
 -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출력한 이체확인증(출금계좌 명시되어야 함)
 - **무통장입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업체부담금 이체내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개인부담금은 해당되지 않음

8. 산업체 추천 지원자 유의사항

■ 재학 중 학적유지 관련 유의사항

- 계약학과 입학 후 산업체에서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하고 및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제2항)
-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로 자진 퇴사하여 학생 신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은
 -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개인 부담으로 학적 유지
 -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 할 경우 학적 유지
- 학적이 유지되는 퇴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확인서**’ 등 근로복지공단 발급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조사관련 유의사항

- 입학 시 당해 산업체가 발급한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학자격을 확인.
- 입학 후 재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월 시행하는 재직조사에 반드시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적 처리됩니다.
 - 매 학기 개시전월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매 가을학기 개시 전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이미 접수된 원서 및 서류는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원서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접수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접수 하여야함
-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9.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1.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을 취소함.
2.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본교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기타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처리함.

10. 관련문의

전공	연락처	담당자
사회복지행정학	031-450-5008	백진아 교수
사회적기업학	031-450-9865	윤준영 교수
U-city/보안경호소방안전	031-450-5254	권창희 교수
IT융합지능로봇공학과 IT융합전자공학과(채용조건형)	031-450-5146	이왕헌 교수
ICT환경공학	031-450-9884	김선집 교수
산학협력팀	031-477-7503	한근수 담당

■ 조세특례제한법 안내

□ 산업체의 계약학과 운영비용 부담에 대한 조세혜택 내용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비용 부담경비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일정비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²⁾을 부여하고 있음

구분	국세	지방세	비고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공제항목	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 또는 법인세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	
감면비율	중소기업	100분의 25	100분의 25 X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8	100분의 8 X (100분의 10)
	대기업	최대 100분의 3	최대 100분의 3 X (100분의 10)

※ 맞춤형 교육비용 중 수도권 내 소재 대학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지방세의 경우 1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봄

※ 산업체별 실제 감면비율의 적용은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 신고절차

[국세]

- 각 사업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서식 등) 규정에 따라 신고서식을 첨부하여 신고
- 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기 경과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45의 2 ①)

[지방세]

- 각 사업년도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감면신청) 규정에 따라 신고서식을 첨부하여 신고
- 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기 경과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51 ①)

2)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구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직원의 근무부서, 훈련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1119, 2009.10.1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또한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질 경우 연구소 소속의 연구인력 및 당해 기술이 적용되어지는 생산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용만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 18(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산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용(맞춤형교육비용)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